

<p>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·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2)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p>○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·관여하는 교통요금, 도시가스요금,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, 사용료에 있어 도시가스요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'98.8.1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요금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</p> <p>○아울러 위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의 직위를 금번·조직개편으로 '98.8.12자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.</p> <p>4.질의·답변 : 생략</p> <p>5.심사결과</p> <p>○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</p> <p>6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업무의 위탁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이 조례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</p>	<p>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</p> <p>2.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3.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경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4.한국지역난방공사</p> <p>5.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</p> <p>6.국내외 에너지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운영·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</p> <p>7.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p> <p>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, 설시설계, 시공 및 감리</p> <p>2.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</p> <p>3.시설분담금, 열요금 등의 징수</p> <p>제12조제1항 중 "통상산업부장관"을 "산업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위탁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) ①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이관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
---	---

<p>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도시가스요금(다만,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 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,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제4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5. 기획예산실장, 행정관리국장, 보건복지국장, 산업경제국장, 시정기획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제3조 제2항 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 제2항 중 “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”로,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중등교육국장”을 “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9조 제2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32조 중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문화행정계장”을 “문화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35조 제1항 중 “11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”을</p>	<p>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문화관광국장과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5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체없이 각 학무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”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”를 “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2조”로 하고 “규정함”을 “정함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) ① 서울특별시립 초·중·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한다.</p> <p>② 영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(학생수 60명 미만)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,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상실)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</p> <p>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·퇴학한 때</p> <p>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</p>
--	--